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등)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 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기업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	제4조(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등) <u>산업통상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5조(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등) ① ~ ④ (생략)	제5조(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④ 「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“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 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산업통상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⑤ (생략)	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⑥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 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현황 및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.	⑦ <u>산업통상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⑦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은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제도의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·운영할 수 있다. 제6조(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)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에게 보고해야 한다. ② (생략) ③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<u>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</u>에 공고해야 한다. 제7조(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)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에게 신청해야 한다. ②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	⑧ <u>산업통상부장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6조(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산업통상부장관</u>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산업통상부장관</u>----- ----- ----- <u>산업통상부 인터넷</u> ----- -----. 제7조(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산업통상부장관</u>----- -----. ② <u>산업통상부장관</u>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우에는 해당 연구시설·장비 등을 보유한 대학·연구기관·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. 제8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<u>2025년 1월 1일</u>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제8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<u>2026년 1월 1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